[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2802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0.18

(전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0.28

leaderskorea01@naver.com

닭갈비<mark>직화구이</mark>전문점



정 보 공 개 서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울동네 꾸이집」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 402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932-388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932-383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 운영팀 031-932-388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울동네꾸이집 외 4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 402호					
(주)리더스 코리아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코퍼레이션	2008.09.08	2008.09.16	목성원 031-932-3881		031-932-3831		
	법인등록번호	285011-0149258	사업기	· 다등록번호	128-86-3382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시	주 소				
	пио	울동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8, 402호				
대표이사	목성원	꾸이집 이 4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외 4개	목성원	031-932-3881	031-932-383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시		주 소			
	박진수 -	울동네	경기도 고양시	l 일산서구 중앙료	로 1568, 402호		
사내이사		꾸이집 이 4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외 4개	목성원	031-932-3881	031-932-383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울동네꾸이집]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울동네꾸이집	닭갈비요리전문점
상 호	울동네꾸이집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닭갈비직화구이전문점 축하에 조를 33 07 2년	등록번호: 40-2030088
광 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963,462	632,197	331,265	3,298,409	34,572	49,448
2022년	815,539	584,475	231,063	3,076,360	-45,777	-100,201
2023년	923,214	670,081	253,132	3,098,235	44,761	22,069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러어버 이르		현 직위	사업경력					
산년어구 	관련여부 이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목성원	대표이사	2008.09. ~ 현재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박진수	사내이사	2008.09. ~ 현재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 사내이사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 이스/며\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2	-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홍스쭈꾸미	가맹사업 경영	2007.01. ~ 현재	홍스쭈꾸미(등록번호:20100100268) 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진지방순대국	가맹사업 경영	2019.12. ~ 현재	진지방순대국(등록번호: 20191317)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태성춘 골뱅이신사	가맹사업 경영	2020.08 ~현재	태성춘골뱅이신사(등록번호:20201087) 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울동네꾸이집	가맹사업 경영	2021.10. ~ 현재	울동네꾸이집(등록번호: 20212802) 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화도반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예정	화도반점(등록번호: 20212485) 이라는 영업표지의 중식사업 경영예정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닭갈비직화구이 전문점	닭갈비 <mark>직화구이</mark> 전문점	2021.08.20. 출원	출원 제 40-2021-0172162	㈜리더스 코리아	2022.06.01
울동네 꾸이집 (상표권)	**************************************	2023.06.01. 등록	등록 제 40-2030088	- 고디아 코퍼레이션	2033.06.01.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田. 가맹본부의 [울동네꾸이집] 가맹사업 현황

1. [울동네꾸이집]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개점일) : 2021년 04월 23일

2. [울동네꾸이집]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리더스 코리아	울동네꾸이집	목성원	2021.04.23.~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코퍼레이션				1568, 402호(대화동, 하성프라자)

3. [울동네꾸이집] 업종

영업표지	업종					
울동네꾸이집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골등네구이입 	기타외식	닭갈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울동네꾸이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	6	-	7	7	-	4	4	-
서울	1	1	-	1	1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1	1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	4	4	-	4	4	-
강원	-	-	-	-	-	-	-	-	-
충북	2	2	-	2	2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울동네꾸이집]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7	-	1	-	6
2022	6	2	-	1	-	7
2023	7	-	3	-	-	4

6. [울동네꾸이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울동네꾸이집]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1 4	0포/이급	884	등록번호	BO	2021.12.31.	2022.12.31.	2023.12.31.	
		화도반점	20212485	중식	0/0	0/0	0/0	
		울동네 꾸이집	20212802	한식	6/0	7/0	4/0	
(㈜리더스코 가맹본부 리아코퍼레 이션	진지방 순대국	20191317	한식	13/0	16/0	18/0		
		태성춘 골뱅이신사	20201087	한식	9/0	14/0	15/0	
		홍스쭈꾸미	20100100268	한식	16/0	10/0	7/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울동네꾸이집]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산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가맹점수	
전체	4	172,574	9,204	252,344	16,823	87,311	4,366	4
서울	-	-	-	_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4		해당없음(5개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울동네꾸이집]에 대한 지사 및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울동네꾸이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울동네꾸이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약 625일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울동네꾸이집]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3]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출 비				
구분	수단	기간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राः (धस्त्रभा)	15,396	्राः (भास			
	소계	्राः (धस्या)	15,396	्राः (भार			
광고	TV	해당없음					
	라디오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소계	해당없음					
판촉	1월행사	해당없음					
	추석행사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1	031-919-05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별첨) 가맹금 예치신청서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우리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울동네꾸이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시 지급하여야 하 나 당사의 동의 를 얻어 분할지 급 가능함	공사개시 전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오픈 전 : 제공 된 제품 서비스 (정보제공 인력 제공)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오픈 후 : 반환 하지 않음(소멸 성)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재료 및 교육 진행에 따른 인건비 소요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	
가입비	5,500	
교육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7]쪽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38,900~ 43,850]	-	1	-	-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본부	12,700	847	설치 7일 이전	설치 7일 전 계약취소	간판, 내부사인몰, 주방설비, 홀집기 외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13,200	88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이전	공사 7일 전 계약취소	49.5㎡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30천원 추가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3.000 ~ 7,400	-	물품 공급 3일 이전	상품 미 공급시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10,000 ~ 10,550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철거, 냉난방기, 전기, 가스, 닥트 , 기타 소모품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점포 실측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 포입지, 지역, 규모, 구조, 물가인상, 디자인 변경, 품질 등의 사유 및 기타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상기금액 또는 지급대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m²당 66만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031-932-3881)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희망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주방 및 홀 교육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종업원	제한없음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가맹희망자의 사정에 의해서 본사와 협의 후 기간 및 교육인원, 교육 대상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울동네꾸이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아래의 별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금액(천원)		총액의 50%	20%	3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220	익월 05일	영업표시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V-8-1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 개선 시 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Ⅷ-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경영상태	분기별 1회 점포의 경영점검 및 시정요구	사전조율	운영팀 031-932-3881
시설	노후시설의 교체, 보수	사전조율	운영팀 031-932-3881
재고관리	적정재고 권장	수시	운영팀 031-932-3881
회계처리	오픈지원 시 회계 정산의 중요성 강조	가맹점주 요청 시	운영팀 031-932-388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5,500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신규 가맹비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 시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 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울동네꾸이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리더스코리아코퍼레이션]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 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울동네꾸이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울동네꾸이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울동네꾸이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울동네꾸이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 통보 방법	위반시 책임	비고
직화 소금닭갈비		11,000			
직화 양념닭갈비		11,000			
직화 소금닭목살		12,000		1회 위반 :	가맹본부에 판단에 따라 메뉴 추가, 제외 가능성있음
직화 양념닭목살	왼쪽에 기재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2,000	제한 없음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직화 소금닭연골구이		12,000			
직화 양념닭연골구이		12,000			
직화 소금근위구이		11,000			
직화 양념근위구이		11,000			점주와
직화 뼈없는불닭발		12,000		3회 이상 위반 :	연구되 협의가능
닭곰탕		6,000		계약 해지	
닭칼국수		6,000			
물막국수		6,000			

비빔막국수	6,000
들기름막국수	6,000
오뎅탕	8,000
날치알볶음밥	3,000
주먹밥	3,000
된장찌개	3,000
칠성사이다	2,000
코카콜라	2,000
처음처럼	4,000
참이슬 후레쉬	4,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 거래상대방별로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 1)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갈비 원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울동네꾸이집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
특수상권일 경우 : 특수상권 내 설정	계약체결 시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상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설정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 으로 함)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내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강하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역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어무 외신 도이가 이느 경으 15일 이내에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울동네꾸이집'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울동네꾸이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울동네꾸이집]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0조 1항3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항4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서 제30조(원, 부재료 등 공급금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38조 1항1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개전 전 교육비 등 가맹본부와 약정한 각종 가맹 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2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8조 1항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	38조 1항4
하는 경우	30年 184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리메뉴얼 미 준수 및 가맹점 관리감독 규정 등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8조 1항5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38조 1항6
	JOT 190
○ 가맹사업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38조 1항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기	계약조문
o 가 경	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우	38조	: 2항1
ㅇ 가	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8조	2항2
	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8조	: 2항3
느 명· 가. 역 나. 역	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u>다음 각 목의 어</u>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8조	2항4
또 그	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 2항5
반, 간(맹, 경-	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8조	: 2항6
ㅇ 가	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8조	2항7
	맹점사업자가 <u>뚜렷이</u>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u>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취를</u>	38조	2항8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8조 2항9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와 상호간 협의를 통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문의: 담당팀 (031-932-388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 니다.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원칙적으로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 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 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행정구역상 동일한 시]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울동네꾸이집]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닭갈비를 철판에 요리하는 형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담당팀 (031-932-388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울동네꾸이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주 6일 이상	문의: 담당팀 (031-932-38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제한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1회/월	본사 담당팀	-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1회/월	본사 담당팀	-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1회/월	본사 담당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울동네꾸이집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비율		분담 절차	ш¬	
一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비고	
	상품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균일 부담	광고 계획 등고 → 가행심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전체 적용	
	할인행사	행사에 [다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증정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팜플렛 제작 외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중 빠른 시점)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로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가맹금을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그 나머지를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단위 : 원)

해약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	2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10일 경과한 날부터 가맹점 개점전 까지	300만원	
개점 관련 발생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 등의 비용	실제 발생 비용 전액	

2)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해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평균 월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15일이 남은 잔여 계약기간인 경우 11개월로계산)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당사 또는 귀하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와 정보공개서에 임원으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상담	문의 희망지역 접수, 담당자 상담, 정보 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일 이전	없음
점포개발 상권분석	희망지역 결정, 상권조사, 입지지역 분석, 확정	필요 시	점포임대 비용
가맹점 계약	개설 승인, 가맹점계약서 제공, 총 견적 산출, 계약체결, 계약서 1부 보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없음
가맹비 및 공사대금 지급	가맹비 및 공사대금 입금	계약서 작성 후 즉시	10,000
도면 미팅	도면 교정 및 확정	3일	없음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25일	22,500
교육 실시	개점 전 교육 실시	3일~10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병행진행
오픈 점검	재료 및 가구 입점, 오픈 상황 점검, 전체 공사 일정 마감	1주	15,000
오픈	오픈 행사 실시, 기타 미비점 파악 후 A/S	2일	없음
합계		약 40일	47,500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제외사 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경우 이위생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기 정상적인 영의 등의 어렵 거나 영업에 주는 경우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점 사 업 자	수반하지 않는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담당팀 (031-932-388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담당팀 (031-932-388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울동네꾸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고객관리 및 서비스 교육 입금 방법 등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현장 교육	메뉴 교육 및 종업원 서비스 교육 등	실습교육	가맹점 개점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개점 전 전반 교육	실습교육	수시	보충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울동네꾸이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및 개점전에 필 요한 제반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3일 (상호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20만원	필수
특별/기타 교육 (개점 후)	신메뉴 조리방법	집체교육 또는 S/V를 통한 개별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협의 (신메뉴 출시 시 필수)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서비스 기법 외	집체교육 또는 S/V를 통한 개별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현장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와 협의 후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2022년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3년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1] 인근 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지역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점주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원	은 '가맹사	업거래의	공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성	에 의거	가맹	본부5	2
부터								<u>.</u>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	로 작성	예시	l) <u>인근 가</u> 당	맹점 현	현황문서를	제공	받았습	<u>니다.</u>)

가맹본부:

(인) 또는 서명

[별첨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 '가맹시	¹ 업거래의	의 공정호	ի에 급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어	의거	가맹본	부로
부터_								<u>.</u>				
(정보급	공개서 :	제공받은	사실을 2	자필로 작	성	예시) <u>정보</u>	공개서를	제공 빋	았습니	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첨4] 울동네꾸이집 가맹점 리스트(2023년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